

연구소/전담부서 변경신고 방법 및 청문참여 안내

1. 연구소/전담부서 변경신고 방법

취소예정일 이전에 변경신고를 완료하여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해소한 경우,
청문참여가 불필요 합니다.

변경신고는 연구소신고관리시스템(www.RND.or.kr)에서 진행 바랍니다.

* 취소예정일 전일까지 변경신고 처리완료 되지 않은 경우 일괄 반려 후 취소됩니다.

* 전화문의가 많습니다. 아래 안내에 따라 변경신고 등을 통해 청문원인을 해소바랍니다.

벤처기업 유효기간 만료

- ① 벤처기한이 연장된 경우: 기한 연장된 벤처기업확인서 첨부하여 변경신고
- ② 벤처기한이 연장되지 않은 경우 (변경신고기한 내 벤처기한 연장이 불가능한 경우 포함)
 - 중소기업확인서 첨부하여 중기업 또는 소기업으로 신고 및 연구전담요원 충원 (중기업: 5명이상, 소기업: 3명이상, 창업 3년 미만의 소기업: 2명이상)
- ③ 위와 같이 ①,②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 자진취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신규 설립

창업3년 소기업 '연구소' 유효기간 만료

- ① 변경신고: 대표이사 전담요원 제외 및 연구전담요원 추가 배치(벤처: 2명이상, 소기업: 3명이상, 중기업: 5명이상)
- ② 자진취소: ①의 요건 미충족시 연구소 자진취소 후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신규설립

창업3년 소기업 '전담부서' 유효기간 만료

- ① 변경신고: 대표이사 전담요원 제외 및 연구전담요원 추가 등록 후 변경신고(연구전담요원 1명이상)
- ② 자진취소: ①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연구개발전담부서 자진취소

현지확인(서면확인) 시 조건부취소 결과를 받은 기업

수령한 현지확인(서면확인) 보고서 상의 조치사항을 보완하여 변경신고

현지확인(서면확인) 시 직권취소/허위취소 결과를 받은 기업

소명할 내용이 있을 시, 청문 참석 (청문 불참 시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이 확정)

현지확인시 추적불가 결과를 받은 기업

이전한 주소 및 담당자, 인력현황 등을 업데이트하여 변경신고

2. 청문참여 안내

□ 사전의견 제출을 통한 청문참여 안내

기한 내 변경신고 처리완료 시, 사전의견 제출 및 청문참여 불필요

사전의견 제출과 청문 참여는 동일한 효력을 지님

사전의견 제출서류

가. 공문(자사양식)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에 대한 의견내용 등을 기재

나. 위 공문에 기재한 의견에 대한 증빙자료 등(자유양식)

다. 제출기한 : 청문일자 전(10/27(월))까지 제출가능

라. 제출방법 : 이메일(kisong@koita.or.kr)

□ 청문참여 방법 및 유의사항

청문참여 방법

① 소명할 사실에 대한 사전의견 제출서류(공문, 증빙자료)를 청문 전 본회에 제출

② 직접 참석

※ 청문에 직접 참석할 의사가 있는 경우, 본회로 사전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에 직접 참석할 경우, 사전의견 제출과 마찬가지로 공문 및 증빙자료 등을 반드시 지참하여 소명할 사실에 대해 진술해야 합니다.

청문참여를 통해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에 대한 소명 또는 “법적근거”가 변경 되지 않는 경우, 청문 이후 안내된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은 확정됩니다. 사전의견을 제출하지 않거나 청문에 불참할 경우의 추가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 사전의견서 및 증빙자료에 따라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법적근거”에 대한 소명은 불가할 수 있습니다. 청문시 기업 내부사정 등(예: 단순 실수, 인수인계 부족, 신고하지 않은 대체인력 존재 등)에 대한 의견제출이나 진술은 고려되지 않습니다.